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 7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2024년 제 2 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"회사")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.

일 시: 2024년 08월 05일 (수) 오후 1시

장 소: 본점 회의실(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)

| | |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발행주식총수 | 보통주 | 800,001주 |
| | 제1종종류주 | 346,667주 |
| | 제2종종류주 | 199,999주 |
| 주주총수 | 10명 | |

| | |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출석주식의 수 | 보통주 | 800,001주 |
| | 제1종종류주 | 304,667주 |
| | 제2종종류주 | 199,999주 |
| 출석주주의 수 | 7명 | |

의장 대표이사 이준구는 본 회의의 소집 절차가 정관에서 정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출석한 주주가 정족수에 충족하였으므로,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였다.

(결의 사항)

□ 제1호 의안: 정관 일부 변경의 건(특별결의)

의장은 정관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관을 변경할 것을 설명하고 출석 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즉, 참석 주주 전원이 이의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 1 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| 변경전 | 변경후 |
|--|--|
| 제 9 조 (주식의 종류와 보통주식의 내용)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, 그 종류는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으로 한다. ②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. | 제 9 조 (주식의 종류와 보통주식의 내용)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, 그 종류는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, 제3종 종류주식으로 한다. ②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식, 제1종 종류주식, |

| | |
|--|--|
| <p>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 8종으로 한다. 단,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권종의 주권을 발행 할 수 있다.</p> | <p>제2종 종류주식, 제3종 종류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③ 회사가 발행할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, 10,000주권 8종으로 한다.</p> |
| <p>제 9 조의 2 (종류주식의 내용)</p> <p>① 회사는 제1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②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③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우선으로,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급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급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| <p>제 9 조의 2 (종류주식의 내용)</p> <p>① 회사는 제1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② 회사는 제2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③ 회사는 제3종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누적적,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있다.</p> <p>④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우선으로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0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급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 |

| | |
|---|--|
| <p>3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다만,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 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회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-18, 7-19 토지(이하 통틀어 "추가 부지") 및 지상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(이하 "추가 건물", 추가 부지와 추가 건물을 통틀어 "추가 부동산")에 관하여,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 등 금원(이하 "추가 이익금")을 수령하는 경우:</p> <p>1)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(이 경우, 해당 금액이 추가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의미한다)의 15.0%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, 나머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2) 본 목 1)과 관련하여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명확히 하면, 해당 초과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목 2)는 적용되</p> | <p>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7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3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5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4.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다만,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 항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회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-18, 7-19 토지(이하 통틀어 "추가 부지") 및 지상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시설(이하 "추가 건물", 추가 부지와 추가 건물을 통틀어 "추가 부동산")에 관하여,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가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 등 금원(이하 "추가이익금")을 수령하는 경우:</p> <p>1)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(이 경우, 해당 금액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의미한다)의 15.0%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,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</p> |
|---|--|

| | |
|--|---|
| <p>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배당가능한 이익(이하 "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")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한다. 이 경우 "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"이라 함은 (A)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매매대금(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및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,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다)에서 (B)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,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(해당 비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한다)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(A-B)을 의미하며,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.</p> <p>가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 중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.</p> <p>(1) 각 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각 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한다.</p> <p>(2) 위 (1)의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, 그 중 각 15.0%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에</p> | <p>배당하고, 나머지 이익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2) 본 목 1)과 관련하여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추가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명확히 하면, 해당 초과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목 2)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</p> <p>5.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배당가능한 이익(이하 "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")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아래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한다. 이 경우 "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"이라 함은 (A)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매매대금(해당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른 조기상환 및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,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다)에서 (B)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지급한 매매대금 및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각종 부대비용, 금융비용 및 관련 보수 등 일체의 비용(해당 비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안분하여 계산한다)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(A-B)을 의미하며, 음수(陰數)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.</p> <p>가.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</p> |
|--|---|

| | |
|---|--|
| <p>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, 나머지 7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</p> <p>가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초과금액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 <p>④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 제1호 및/또는 제2호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</p> <p>⑤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우선으로,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2.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 제2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 | <p>당가능이익 중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각 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각 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한다. (2) 위 (1)의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, 그 중 각 15.0%를 각각 제1종 종류주식,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하고, 나머지 7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<p>나. 제3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매각원인 배당가능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초과금액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</p> <p>⑤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 제1호 및/또는 제2호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</p> <p>⑥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최우선으로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 제1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3종 종류 |
|---|--|

| | |
|---|---|
| <p>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3.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3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4.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3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5. 제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3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6. 제3항 제4호 가목 (2)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미배당금액을 제3항 제4호 가목 (2)에서 정한 배당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한다.</p> <p>7. 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</p> | <p>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2.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 제2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3.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4항 제3호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누적된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금액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4.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4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5. 제4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4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6. 제5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</p> |
|---|---|

| | |
|---|--|
| <p>경우 제 1 종 종류주식, 제 2 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</p> | <p>발행가액 상당액(제4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7. 제6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(제4항 제4호 가목 (1)에 따라 이미 배당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)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8. 제4항 제4호 가목 (2)에 따라 배당되어야 할 금액 중 미배당금액이 있는 경우, 미배당금액을 제4항 제4호 가목 (2)에서 정한 배당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배한다.</p> <p>9. 제8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</p> <p>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제 1 종 종류주식, 제 2 종 종류주식, 제 3 종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</p> |
| <p>제 10 조 (주식 양도의 제한) 회사의 모든 주식의 양도(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양도 포함)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,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</p> | <p>- 삭제 -</p> |
| <p>제 13 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어느 사업연도의 중간에 유상증자,</p> | <p>제 12 조 (신주의 동등배당)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,</p> |

| | |
|---|--|
| <p>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 단, 제 1 기 사업연도에 한하여 회사가 사업연도 중간에 발행한 제 1 종 증류주식, 제 2 종 증류주식 및 보통주의 경우 해당 신주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 기간은 주금 납입일(해당 사업연도에 신주 발행이 수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납입된 금액별로 기간을 계산함)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</p> | <p>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한 동종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. (여기서 동종주식이란 당사의 정관 제 9 조 및 제 9 조의 2 에서 구분한 주식이 아닌, 한국거래소 표준코드상 동종 주식을 의미한다.)</p> |
|---|--|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한다.
(폐회시간 : 오후 1시 30분)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.



2024년 8월 5일

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겸 대표이사 이준구

